

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성북!



성북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2014년 회계연도 『지난년도 체납구세 징수포상금』 지급 원인행위

1. 2014년 회계연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2014년 9월~12월중에 징수한 지난년도 체납구세 징수포상금을 회계연도내에 지급하여야 하지만, 최종적인 징수내역 등의 확인이 2015년 1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기에

2.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마감 전에 원인행위를 시행하고 2014년 9월~12월분 체납구세 징수포상금은 2014년 12월분까지의 징수내역 확인이 가능한 2015년 1월 ~ 2월 중 지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 원인행위 하고자 합니다.

- 아 래 -

가. 미집행 잔액 : 610,660원

나. 원인행위 금액 : 610,660원

다. 집행예정일 : 2015년 1월 20일 ~ 2월 28일

라. 원인행위 사유 : 2014년 12월말까지의 징수 포상금 지급을 위한 징수내역 확인 및 징수보고서 작성이 2015년 1월 20일 이후에 가능

마. 예산과목 : 세수증대 및 신뢰세정구현, 세외수입 및 지방세세입증대, 체납지방세 징수활동강화, 포상금, 포상금. 끝.

주무관 박창호 38세금징수2담당 안대식 세무2과장 문영희 기획경제국장 12/17 김석진

협조자 세입정리담당 이광호

시행 세무2과-27448 () 접수 ()

우 136-706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(삼선동5가) / http://www.seongbuk.go.kr
전화 02-2241-4163 /전송 02-2241-6581 / chpark@eseongbuk.kr / 대시민공개